

황현아 연구위원

요 약

- 202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 [④ 2018다212740 판결]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른 보상 시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
 - (판결요지) '자동차상해특약'과 '자기신체사고'는 기능이 유사하나, 양자는 별개의 담보이고 보상범위도 상이하며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 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종이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보통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보상 시 보험자대위를 불허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 시에는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 (검토의견) 약관 문언, 이종이득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는바, 향후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⑤ 2018다304014 판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wilful'의 의미
 - (판결요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면책사유인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에서 'wilful'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원심과 같이 계획적이거나 의욕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함
 - (검토의견) 원심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 'wilful'이 계획적인 고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였으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자산운용사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된 기업보험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언의 일반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⑥ 2019다249305 판결] 재해사망특약 관련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판결요지)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1급 장애 발생을 원인으로 장애보험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피보험자 사망 이후 다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이하, '후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후행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 장애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
 - (검토의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할 때 약관 해석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판례 취지에 따를 때 향후 동일한 쟁점에 관한 판결에 중복·모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검토 배경

- 202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제시함¹⁾

〈표 1〉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구분	사건번호	쟁점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보험료 환급 시 수수료 반환 요건
3	(손)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임의비급여 관련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 시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
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wilful'의 의미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재해사망특약 관련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주: 순서는 선고일 기준이고, (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의미함



2.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 시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2018다212740)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운전자 A는 본인의 차량에 자신의 처 B 등 동승자 4인을 태우고 급경사·급커브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였음
 -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는 제주도인데, 경사와 커브가 심하여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 A와 동승자 C, D가 사망하고, A의 처 B와 다른 동승자 E가 상해를 입었으며, 상대 차량인 버스의 운전자와 탑승자 14인이 상해를 입었음
- A는 X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바, X는 A(사망)와 B(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담보에 의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함

1) 검토 대상 판결 6건 중 3건(1~3)은 지난 호에서 검토하고, 나머지 3건(4~6)을 이번 호에서 검토함

- 이후 X는 제주도에 도로 부실 관리의 책임을 물어 구상을 청구하였음²⁾

○ 원심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관 조항 해석상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B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기한 X의 청구 부분을 기각함

- 원심법원은, 보통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해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통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은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A·B)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고, 대인배상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동승자 C·D·E,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아, 원고(X)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원심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보험약관 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³⁾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와 달리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상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상해특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을 자동차상해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 해석 시 자동차상해특약을 자기신체사고로 간주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약관상 존재하지 않음
-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당한 중복보상 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책임을 영조물책임이라 함(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제주도의 영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A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는데, A(정확히는 A의 보험사인 X)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제주도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한 것임. 원심판결은, 제주도는 (i) 관련 규정상 이 사건 도로와 같이 경사와 커브가 심한 경우 적정 속도가 40km/h 내지 50km/h임에도 제한속도를 60km/h로 표시하였고, (ii) 급커브 표지 외에 별다른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iii)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중앙분리대 등 안전 확보 시설을 추가 설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주도의 위와 같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제주도 측의 책임 비율을 20%로 정하였음(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제주도의 책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지 이중보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중복보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른 약관 규정과 충돌함

- 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 I, 대인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보상받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나 제3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보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중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검토의견

○ 자동차상해특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음

- 보험자대위가 불가능하다고 본 판례들은 자동차상해특약과 보통약관상 자기신체사고(담보)는 기능이 동일하고 보상 수준만 달라 사실상 동일한 담보이므로, 보험자대위에 관해서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⁴⁾
- 반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들은 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는 별개의 담보라는 점 및 보험자대위를 불허할 경우 이중이득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⁵⁾
- 본건 판결은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 판결에 의해 기존 대법원 판결이 폐기된 것은 아님⁶⁾ 상반되는 취지의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임

○ 향후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고, 각 보험회사별 자동차상해특약의 문언에 따라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임
- 보통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자기신체사고의 인보험으로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통일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자동차보험약관을 정비하여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특약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보들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및 이 사건 원심; 한편 자동차상해특약에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판례도 있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이 판례는 거꾸로 해석하면 자동차상해특약에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됨

5) 이 사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5093239 판결 등

6) 판례변경은 전원합의체로 하여야 하나, 본 판결은 민사3부에서 선고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대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wilful’의 의미(2018다304014)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A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설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우즈베키스탄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B의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대출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당시 법령상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야 하는데,⁷⁾ 당시 B가 확보한 사업부지는 우즈베키스탄법상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하였고, 그밖에 A가 확보한 다른 담보⁸⁾들은 대출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
 - 이에 A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A를 상대로 관련 법령 위반 및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는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약 12억 원) 및 소송비용 등(8천만 원)을 지출하였음
- A는 X보험회사에 가입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X는 A의 행위가 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A가 가입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된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그 배상액 및 비용 등을 보상하되,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 시(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었음
 - X는 A가 당시 법령상 충분한 담보 확보 의무 및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위반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심법원은 ‘wilful’은 단순한 고의를 넘어 계획적이거나 의욕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고 미필적 고의는 포함하지 않는데 본 사안의 경우 A에게 이러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음
 - 원심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면책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wilful은 계획적이거나 의욕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wilful’은 일반적인 고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판단함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

8) A는 B가 보유한 개발사용권에 대한 양도담보,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시행사 주주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 등을 확보함

-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위 조항을 해석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고, 'wilful'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통상의 '고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러한 전제에서 A가 관련 법령상 부과된 담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다. 검토의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보충성,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업보험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wilful'을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와 동일하게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제한적·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운용사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된 기업보험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례라고 볼 수 없음



4. 재해사망특약 관련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2019다249305)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A의 배우자 B는 2010년 1월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되어 심폐정지 및 이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16년 11월 사망함
 - A와 B는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손해액의 2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음
- A는 B가 식물인간 상태일 때 기존에 가입한 X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특약에 따른 보험금(1급 장애)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고(이하, '선행소송'), B의 사망 이후 다시 특약에 따른 보험금(사망)을 청구함
 - B는 A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X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동 특약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등급분류표 중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고 B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1급 장애에 해당하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 그 후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X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재해

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선행소송에서 A가 패소하였으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선행소송과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동일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함
 - 기존에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던 것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원심은 이 사건 소송과 선행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임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1급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 약관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재해로 인한 장애보험금 청구와 사망보험금 청구를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다른 법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판단이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재해사망특약상 장애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재해사망특약 약관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다. 검토의견

- 대법원은 피보험자 권익 보호 필요성 및 이 사건 선행소송 기각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선행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장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선행소송에서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가 소멸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A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선행소송과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게 됨
- 다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같은 약관 해석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향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중복 또는 모순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 사건의 쟁점은 약관의 해석이 아니라 선행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인데, 대법원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같은 약관 해석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이 법리

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 한편,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보호 필요성 및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본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좁게 판단하게 되면 선행소송과 후행소송 간의 중복·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선행소송(장해보험금)에서 해당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후행소송(사망보험금) 제기가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후행 소송에서 해당 사고가 재해인지 여부를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후행소송의 판단이 선행소송과 동일할 경우 재판의 중복이, 후행소송의 판단이 선행소송과 상이할 경우 재판의 모순이 발생하게 됨